

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에 관한 규정

제정	1996. 6.26	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-8호
개정	1998. 4.30	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-9호
	2003. 1.17	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-1호
	2009. 8.24	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36호
	2009. 11.22	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-55호
폐지 제정	2011. 1. 1	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-1호
개정	2014. 8. 8	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49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에 의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중소기업제품 홍보

제2조(중소기업제품홍보실무위원회) 홍보대상 중소기업제품 및 업체선정 등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홍보실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·심의 의결한다.

1.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수단 및 방안 발굴
2. 홍보대상 제품선정
3. 기타 중소기업제품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담당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제품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(이하“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③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홍보대상 제품의 사용방법, 품질,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업 및 시험검사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홍보지원 신청 등) ① 청장은 중소기업제품 홍보계획을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홍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홍보대상 제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 대상 제품의 관리 등) 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, 선정된 제품을 별지 2에 의하여 관리하고, 필요시 홍보지원 업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대상 제품선정 기준) 제9조제3항의 홍보대상 제품의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기준을 따로 정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(홍보효과 분석 등) 청장은 필요시 홍보된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.

제13조(존속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-1호를 폐지한다.

【별 표】

홍보지원 대상 제품 선정 기준

1차 서류심사(중소기업유통센터)

○ 신청기업의 제반 서류 확인 및 문제점 검토

2차 홍보지원 대상 제품심사(중소기업제품 홍보실무위원회)

- 시장전망 및 독창성, 품질 및 기술력 등 각 평가항목에 대해 20점과 10점 만점으로 구분하여 5등급 평가 후 총점 산출
- 총점 70점 미만(가점포함)이거나 부적합(E) 등급이 있는 업체는 지원제외
- 평가항목 및 배점

항목	시장전망 및 독창성	품질 및 기술력	홍보 및 마케팅활동	홍보 적합성	가격 경쟁력	안정성 및 환경성	가점
배점	20	20	20	10	10	20	5

※ 가점기준

- ① 본사기준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이외 소재 중소기업 : 3점
- ② 창업초기기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기준 5년 이내) : 3점

○ 평가점수

구분	A	B	C	D	E
20점 만점 항목	20	15	10	5	0
10점 만점 항목	10	8	5	3	0

심사표

업 체 명	홍보의뢰 제품명	평 가 항 목						총 점
		시장전망 및 독창성	품질 및 기술력	홍보 및 마케팅활동	홍보 적합성	가격 경쟁력	안정성 및 환경성	

년 월 일 심사위원 (인)

【별지1】

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가신청서(양식)

회 사 명	홍보희망 제품의 특징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제품(브랜드)명 :			
사업자등록번호	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특징 / 장점(경쟁제품과 관련) :			
- -				
주 소				
본사 :				
공장 :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가 : 원			
홈페이지 주소	최근 3년간 홍보실적 및 금년 홍보계획(정부지원 홍보제외)			
http://www.	홍보시기 (예시) '00년 0월	홍보매체 XX일보	비 용 500만원	내 용 제품광고
종 업 원 수				
명				
설 립 일 자				
년 월 일				
최근 월평균 매출액				
내수 : 백만원				
수출 : 백만원				
계 : 백만원				

중기청 사업 참여, 특허/ 공인인증, 주요 시험분석 결과 목록

○
○
○
○
○

희망홍보 프로그램	- TV ()방송의 경우 중소기업 비용부담 10%와 별도양식 기술
	- 신문 () - 기타 희망매체 ()

※ 기타 희망매체의 경우 분야별전문지 등 신청기업의 특성상 필요한 매체를 기재할 것. 단, 해당매체를 통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매체로 대체됨.

대표자 성명 : 전화 : 휴대전화 : 전자우편 :

담당자 성명 : 전화 : 휴대전화 : 전자우편 :

※ 신청서 양식에 부적합한 기재(누락, 오기)로 인하여 홍보지원대상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상기제품 홍보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적 분쟁은 모두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

문의 및 접수처	문의 :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(전화)02-6678-9347, (팩스)02-6678-9498 접수 :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(www.smmarketing.go.kr)
제출서류	○ 신청서 1부
	○ 중소기업청 사업참여, 품질인증서 등 기재 내용 증빙서류 각 1부(해당 기업에 한함)

【별지2】

홍보이후 매출/전화문의 현황보고(양식)

회사명	대표자 성명	휴대전화
전화	팩스	전자우편

전화문의건 수(단위 :건)		제품명	
홍보 매체	홍보일자	홍보전 1개월 누계	홍보후 1개월 누계
	월 일		
	월 일		
	월 일		
	월 일		
	월 일		

제품홍보 후 연평균 매출변화(단위 : 천원)	
홍보전 매출	홍보후 매출

홍보만족도 평가 (○표시)					
매우만족	만족	보통	불만	매우불만	사유(간단하게 서술)

건의사항

○
○
○

※ 본 자료는 홍보지원 사후관리로 홍보효과 및 사업개선에 중요한 자료입니다.
회사 대표자님께서 홍보일 기준으로 전·후 각1개월의 누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홍보팀 TEL:02-6678-9347, FAX:02-6678-9498
제출처 :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(www.smmarketing.go.kr)